

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977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어기구 · 정준호

김병주 · 서영석 · 조인철

이재관 · 윤종균 · 노종면

윤준병 · 이용우 · 이해식

최혁진 · 진성준 · 김영환

서삼석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,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‘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’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「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」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은 장소,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, 해당 지침은 행정상 권고기준으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

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,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5항).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·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보관하는 등 응급장비의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맞추어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정비·보완하여야 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7조의2(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~ ④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47조의2(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br><u>⑤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·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보관하는 등 응급장비의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|
| <u>⑤</u>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